

제391회 국회(정기회)

국 정 감 사

주요 업무 현황

2021. 10. 12.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 업무 현황	1
II . 예산집행 현황	4
III . 주요 정책·사업 추진성과 및 계획	5
IV . 202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7
V . 2021년 감사원·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30
VI . 소속기관 운영 관련 사항	32
VII . 각종 민원·신고 처리 현황	35
VIII . 소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 현황 ..	41

I. 업무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출범('08.2.2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 기 능

부패방지

반부패·청렴

- 반부패·청렴 정책 수립 및 청렴교육
- 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권익구제

고충처리

- 고충민원 처리 및 집단민원 조정
- 민원처리 실태 확인·평가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신고처리·신고자보호

- 부패·공익신고 처리
-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행정심판

- 행정심판제도 총괄·조정
- 행정심판 사건 처리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국민소통·제도개선

-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 제도개선
- 국민신문고 / 국민생각함 운영
- 민원 빅데이터 분석·정책환류
- 정부합동 민원 안내·상담, 국민콜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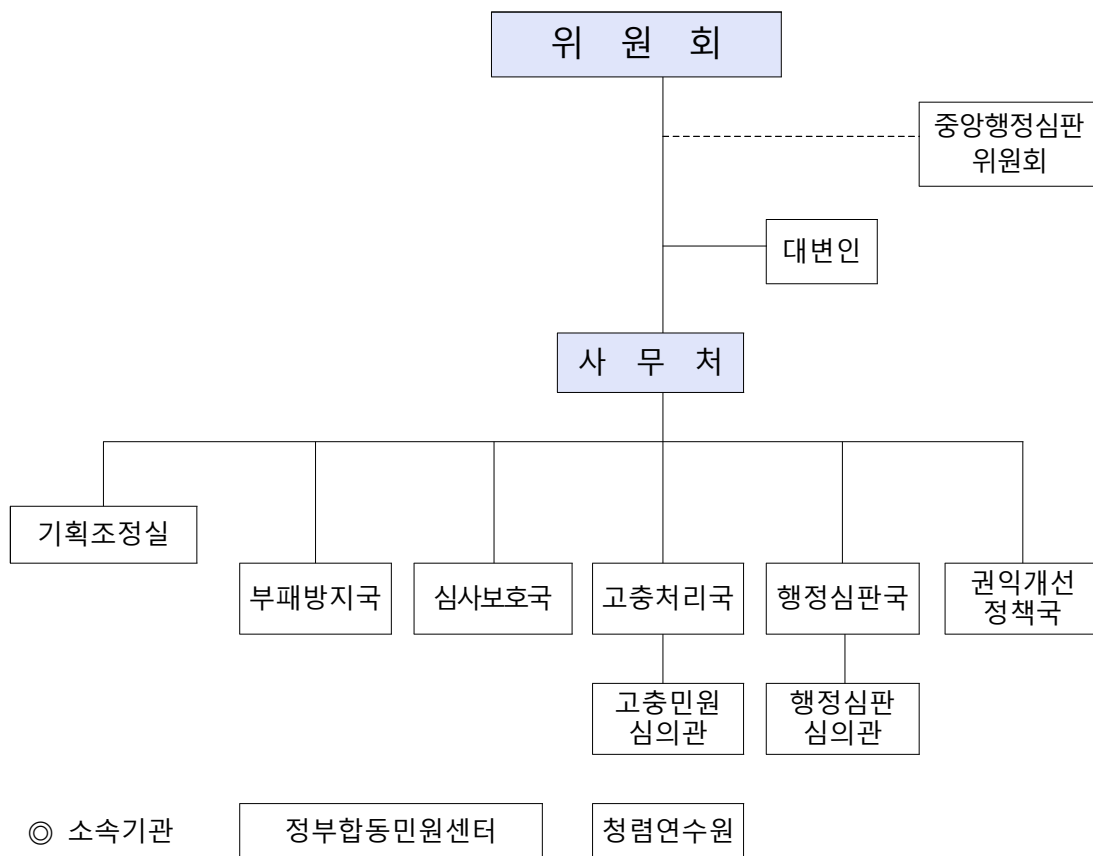
2 일반 현황

□ 위원회 구성 및 조직

○ 위원회 : 15인(위원장, 부위원장 3,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8)

※ 중앙행정심위는 위원장(부위원장 1명 겸임) 포함 70인 이내로 구성(상임위원 4인 이내)

○ 사무처 : 1실 5국 2관 1대변인 41과 3팀 2소속기관



○ 정원 : 561명('21.9.1. 기준)

(단위 : 명)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9급	전문 경력관	특정직	연구사
561	4	17	14	35	41	204	234	8	3	1

□ 예 산

○ 총 908억원 : 인건비478억(53%), 기본경비 74억(8%), 주요사업비 356억(39%)

※ 주요사업비 : 35,565백만원

- 청렴권익문화확산	1,618백만원
- 청렴권익행정정보화	8,861백만원
-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1,055백만원
- 부패·고충제도개선및소통활성화	10,682백만원
- 국민고충해소	1,625백만원
- 반부패청렴정책강화	10,580백만원
- 행정심판	1,144백만원

□ 소관 법령

종류	법령명
법률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대통령령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총리령 (3)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II. 예산집행 현황

(‘21. 9.30. 기준,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21집행액
국민권익증진		90,088	90,835	60,850
☐ 인건비		47,029	47,833	32,483
☐ 기본경비		7,403	7,437	4,608
☐ 주요사업비		35,656	35,565	23,759
○ 청렴권익 문화 확산		1,315	1,618	506
	청렴권익 정책 알리기	1,315	1,618	506
○ 청렴권익 행정정보화		6,383	8,861	7,271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3,506	5,137	4,012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877	3,724	3,259
○ 청렴권익 대내외 협력 강화		3,650	1,055	605
	반부패 기술지원(ODA)	132	78	17
	청렴권익국제교류	3,518	401	173
	청렴권익민간협력		576	415
○ 부패·고충 제도개선 및 국민소통 활성화		10,766	10,682	7,001
	부패·고충 제도개선	74	74	33
	종합상담창구 운영	10,692	10,608	6,968
○ 국민고충 해소		1,295	1,625	1,123
	고충민원 조사활동	1,295	1,625	1,123
○ 반부패청렴 정책 강화		11,087	10,580	6,491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2,622	2,520	1,698
	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	1,993	2,236	1,284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90	90	48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3,233	2,582	2,345
	공익신고제도 운영	2,242	2,242	832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400	401	117
	청탁금지제도 운영	507	509	166
○ 행정심판		1,160	1,140	762
	행정심판 운영	1,160	1,140	762

Ⅲ. 주요 정책 · 사업 추진성과 및 계획

1 주요 추진성과

1. 반부패 · 공정개혁 지속 추진으로 국가청렴도 제고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국내·외 인식과 평가 개선

- 국가청렴도(CPI) : ('17) 54점, 51위 → ('18) 57점, 45위 → ('19) 59점, 39위 → ('20) 61점, 33위(95년 측정 이래 역대 최고점, 최초 30위권 초반 진입)
- 공공기관 청렴도 : ('17) 7.94 → ('18) 8.12 → ('19) 8.19 → ('20) 8.27 (4년 연속 상승)

□ 부패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예방하여 부정한 사익추구를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21.5.18.)
 - * 법 시행준비TF 운영, 시행령 제정 및 공공기관 방문교육 실시 등 후속조치 추진
- 부패신고 처리 관련 피신고자 대상 의견진술 기회 등 제공으로 신고 처리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피신고자 무고 등 권익침해 문제 해소
 - ※ 피신고자 대상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기회 부여(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21.8.17.)

□ 부패현안에 대한 신속·엄정한 대응

- LH 사태 등 부동산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추진
 - ※ 청렴도·시책평가 이해충돌방지 지표 강화, 국토부 산하 공기업 채용실태 특별 점검('21.4.), 개발공기업 내부규정 제도개선 권고('21.7.), 권익위-17개 시도 반부패 업무협약 체결('21.4~6.) 등
-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국회의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21.4~8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 * 신고기간 운영 : 고위공직자 부패행위('21.1.22~4.21.), 공직자 직무관련 투기행위('21.3.4.~6.30.) 등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부패·불공정 현안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립
 - ※ (주요 사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편취 적발 및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21.2.), 국립대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 및 교육부 전면 감사 요구('21.5.)

2.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패·공익신고 제도 강화

- 신고자 보호건수 : ('18) 34건 → ('19) 72건 → ('20) 81건 → ('21.9.) 43건
- 보·포상금 지급액 : ('18) 55억원 → ('19) 43억원 → ('20) 55억원 → ('21.9.) 31억원

□ 신고자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1.4.20.)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총 471개 법률)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지속 강화**
 -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 4개 법률 추가
 - **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책임감면 강화,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 등
-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강화
 -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증원(기존 : 76명 → 증원 : 100명, '21.7.26.)
 - 부패신고의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신설 추진(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국회제출, '21.1.18.)
-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신분보호, 해고 등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 조치(신분보장), 책임감면 등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 실시
 - * 이행률 : ('18) 68.8% → ('19) 76.9% → ('20) 78.0% → ('21.9.) 69.2%
- 보·포상금 지급을 통한 신고자에 대한 지원 강화
 - * 부패신고 보·포상금 23억원(366건), 공익신고 보·포상금 8억원(127건) 지급('21.9. 기준)

□ 범정부 통합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 본격 운영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서비스 개통('21.3.2.)이후 현재까지('21.8.기준) 위원회뿐만 아니라 335개 공공기관이 창구를 개설하고 온라인 신고 접수
 - * 566개 공공기관이 청렴마당을 통해 소관 정보를 공개하는 등 활용 확대 중
- (대국민) 이중 보안장치를 통해 신고자 비밀보호를 강화하고 '신고도우미' 서비스 등 쉽고 간편한 신고 기능 도입
- (공공기관) 표준신고 시스템 및 청렴마당을 통해 공공기관이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청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

3. 국민중심·현장중심의 권익구제 추진

- 고충민원 : 총 14,402건 처리, 1,553건 해결('21.1~9.)
- 집단민원 : 총 186건 처리, 114건 해결('21.1~9.)
- 행정심판 : 총 14,476건 처리, 1,288건 인용 해결('21.1~9.)

□ 국민고충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노력 전개

-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재난 등으로 인한 국민 고충을 해소하여 50,000여 명의 권익 침해 해소('21.1~9.)
 - ※ 총 1,553건의 고충민원 인용 : 시정권고 149건, 의견표명 261건, 조정·합의 1,143건 (주요 사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부지급 이의, 임대주택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금 부과 이의, 어린이 환자 헬리브라 처방 급여기준 개선 요청 등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으로 민원서비스 취약 지역인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의 소외·취약계층 대상 고충 집중 해소(총 39회 운영)
 - ※ 908건의 민원을 상담하여 488건을 현장해결(현장상담해결률 53.74%, '21.1~9.)

□ 집단민원의 적극 해결을 통한 사회갈등의 저감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조정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사회갈등 확산을 방지
 - ※ 집단민원 총 114건을 해결, 49,000여 명의 주민 숙원 해소('21.1~9.)
(주요사례) △ 대한약사회 공적마스크 보급에 대한 정부지원 약속 이행 요구(21,765명), △ 부산 대심도 수직구 공사 피해 대책 요구(3,984명) 등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행정심판

- 행정심판 사건 총 14,476건을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 1,288건의 국민권익 침해 해소('21.1~9.)
-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심판청구 지원을 위해 국선 대리인 제도 선임 지원대상 확대
 - ※ (소상공인)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소득기준 완화(월 270만원 미만→300만원 미만)

□ '한 곳에서 한 번에' 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

- 온라인 민원상담을 적극 처리하고 민원상담협의회를 통해 여러 기관이 얹힌 복합민원을 협의·조정하여 종합적인 민원 상담·해결
 - ※ 온라인 민원상담 : 2,023건('19.10~12.)→ 32,025건('20.)→ 27,555건('21.9.)
 - ※ 민원상담협의회 운영 : 3건('19.10~12.)→ 12건('20.)→ 24건('21.9.)

4. 소통 · 참여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구현

- 국민생각함 참여도 ('21.9.) : 안전수 6,031건, 참여자수 313,412명
- 제도개선 권고 ('21.9.) : 26건 (부패방지 14건, 고충해소 12건)

□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한 정책참여 활성화

- 국민생각함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추진
 - * (주요사례)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신뢰성 제고('21.6.),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 개선('21.6.) 등
- 부처와 협업하여 사회적 이슈 및 정책현안에 대한 국민의견·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국민의 정책 수용도 제고
 - * (주요사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방안('21.1.), 수술실 CCTV 설치('21.6.), 버려지는 음식물 재활용 방안(농촌진흥청 협업, '21.7.)

□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선도

- 주·월간 민원추이, 기관별 민원현황, 국민불편 사례 등이 포함된 민원동향보고서를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대국민 공개* (매주·매월)
 - * 1,191개 공공기관·459개 시민단체 제공,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등에 공개
- 탄소중립, 포스트코로나 등 사회적 현안이슈에 대한 민원빅데이터 분석으로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현안의 적시 해결 지원
 - * 배달대행('21.3.), 전기·수소차('21.4.), 점자블록('21.5.), 중고거래('21.9.) 등 기획 분석 실시

□ 구조적 부패요인과 국민불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부패방지) 제도 속에 내재된 구조적 부패·불공정 유발요인 및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부패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14건, '21.1.~9.)
 - ※ (주요사례) 대학교원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방안('21.6.),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제고('21.7.) 등
- (고충해소)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와 주거·의료·돌봄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12건, '21.1.~9.)
 - ※ (주요사례)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21.2.),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21.9.),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21.9.) 등

2 주요 정책 추진계획

◇ 반부패 개혁 완수로 국가청렴도 도약의 확실한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의 적극 해결로 범국가적 코로나19 위기 극복 선도

비전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힘이 되는 권익위”

목표

국가 청렴수준의
확실한 도약

국민이 신뢰하는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국민고충·사회적 갈등
최우선 해결

주요계획	정책과제
① 반부패·공정 개혁 체감 성과 창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차질없는 시행 준비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고위공직자 등 청렴교육 강화 및 공기업 등 윤리준법경영 확산
	청렴도 평가제도 개편으로 공공부문 청렴역량 강화
	부패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거버넌스 강화
②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부패 사각지대 해소	先보호-後검토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보호 추진
	신고자 비밀보장 및 위원회 보호결정의 이행력 강화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법·시스템 보완
③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적 권익구제 추진	코로나19 시대 국민고충 및 권익침해 최우선 해소
	집단민원 중점 해결 및 집단민원조정법 조속 제정
	국가-지방 읍부즈만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 읍부즈만 활성화
	적극적 행정심판 제도 운영으로 권익구제 확대
④ 국민의 목소리 및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제도개선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예방
	국민생각함 및 민원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개선 지원
	부패방지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으로 종합적 민원상담 추진

1 반부패·공정 개혁 체감 성과 창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차질없는 시행 준비

- (시행령 제정) 정책연구용역 및 입법예고 등 법제절차 진행을 통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신고처리 지침 등 하위규정 마련
 - ※ (시행령 위임 사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공공기관, 각종 신고 처리 절차 등
- (교육·홍보) 법 시행('22.5.19.)전까지 법 적용대상 공직자 약 200만명을 대상으로 대면·비대면 교육 실시 및 공공기관 자체 교육 지원
 - ※ 법 적용대상기관(14,568개)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대상 권익위 주관 교육 실시 및 자체 교육 지원(강의자료, 매뉴얼 등)
- (제도운영 기반 마련) 유권해석, 교육·홍보 등 원활한 제도운동을 위한 조직·인력 확보, 위반행위 신고창구 운영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22.1.~6.)
 - ※ (조직) 행안부 수시직제협의를 통해 1관 4과 30명 요구 예정(12월~)

□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 (사각지대 입법 완비) ①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 ②공직자의 민간 부문 청탁 금지** 등 법 미비점 보완을 위한 법 개정 추진
 - *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수용자 지도·처우 등 교도관 업무(정부안, '21.2.26.)
 - ** 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금지(박영순 의원안, '20.8.19.)
- (신고 활성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된 강화된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도입* 및 준용규정 명확화(정부안, '21.2.26.)
 - *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신고자·협조자 구조금 지급 근거 마련 등
- (과태료 부과 누락 등 개선) 법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주체를 현행 법원에서 권익위로 변경하는 법 개정 추진(유동수 의원안, '20.11.17.)

□ 청렴교육 확대를 통한 청렴의식 확산

- (고위공직자 교육 강화)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시 대면교육 의무화 추진(민형배 의원안, '21.6.18.), 청렴리더십과정 등 특화 교육과정 대폭 확대
 - ※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리더십 과정 : '20년 8회 → '21년 24회

- (이행력 확보) 교육 부실기관의 관리자 특별교육 등 후속조치 근거 마련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홍성국 의원안, '20.10.15.)
- (교육인프라 확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청렴교육 강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청렴연수원 내 교육시설 확충 등 교육인프라 개선 추진
※ 연수원 물리적 공간 한계로 집합교육 수요의 20%만 교육 실시('17~'19, 기준)

□ 공기업 등 윤리준법경영 확산

-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등 도입) 공기업 등에 윤리준법경영이 정착 되도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전문가 의견수렴('21.3~6월), 시범운영기관 선정(6개 공기업) 및 업무협약 체결('21.8.12)
- (윤리준법경영 교육 확대) 공기업 등이 윤리준법경영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
※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 상시·확대 운영

□ 청렴도 평가제도 개편으로 공공부문 청렴역량 강화

- ('21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측정항목을 새롭게 반영하고, 감점 반영되는 부패사건 평가를 강화하는 등 청렴도 측정 강화
※ 일정 : 설문조사·부패사건 평가(8~11월) → 개별기관 청렴도 결과 발표(12월)
- ('22년) 청렴도 측정과 기관의 반부패 노력·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하여 기관의 청렴도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로 개편

□ 부패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거버넌스 강화

- (채용비리 근절) 제4차 공공기관 채용비위 전수조사('21.7~진행중)를 통해 '20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의 비위, 제도개선 이행실태 등 점검
-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와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를 통한 반부패 정책의 정부 내 확산 도모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국민의 시각에서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영향이 큰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 반부패 의제 공론화 기능 강화
※ 민간 주도의 반부패·청렴 의제 발굴→안전화→심의·의결→정책제안으로 연계

②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부패 사각지대 해소

□ 先보호-後검토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보호 추진(윤두현 의원안, '21.3.10.)

- (불이익조치 일시정지 제도 보완·확대)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건을 완화*하고, 공익신고에도 제도 도입

현 행	개 정 안
일시정지 결정 시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 인과관계 판단	일시정지 결정 시에는 고려하지 않고, 최종 신분보장등 조치 결정 시 인과관계 판단
정지기간 최대 45일	신분보장등 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 (신고자 노출 시 신속 조사)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시 신속한 사실관계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 범위 확대*, 불이행 시 제재(과태료)
 - * (부패신고) 현행 : 관계기관 → 개선 : 관계기관·단체·기업, 참고인 등
 - * (공익신고) 현행 : 공익신고 접수기관 → 개선 : 관계기관·단체·기업, 참고인 등
- (신분공개 피해 확대 방지) 신고자 동의 없이 위법하게 신고자 신분이 공개·보도된 경우, 위원회가 관련 기사·정보의 게재중단 등 요청 근거 마련

□ 신고자 비밀보장 및 위원회 보호결정의 이행력 강화(홍성국 의원안, '21.2.3.)

- (신고자 색출 금지)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할 것을 요구·지시하는 자도 처벌
- (이행강제금 및 명단 공표) 위원회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미이행자에 대한 명단공표 근거 신설
 - * (현행) 매년 2회, 이행시까지 회당 최대 3천만원 → (개선) 최대 5천만원
- (징계요구 이행력 확보)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위원회의 징계 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의무 규정 신설

□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법·시스템 보완

-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공공재정 부정청구 관리 강화를 위해 기관별 공공재정 현황 및 부정청구 환수금액 등을 시스템으로 관리
 - ※ '청렴포털'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통합관리 기능을 탑재, 운영('21.3~)
- (적용대상 확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에 공공계약까지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추진

3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적 권익구제 추진

□ 코로나19 시대 국민고충 및 권익침해 최우선 해소

- (달리는 국민신문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외지역, 취약계층의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해 지역형·맞춤형 이동신문고 확대 운영
 - ※ (지역형 이동신문고) 경남, 경북, 경기, 충남, 충북 등 13회 추진(~12월)
 - (맞춤형 이동신문고) 시골장터, 다중이용시설,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대상 13회 추진(~12월)
- (국민고충 긴급대응) 긴급 고충현안 발생 시 '긴급대응반' 투입으로 사회 현안이슈에 대해 신속한 대응 추진, 즉각적인 해결 체계 가동
 - ※ 포항수성사격장 소음피해 대책 요구 등 사회적 현안민원, 태풍·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급증민원에 신속 대응·지원 등 추진
- (기업고충 해소)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대상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운영 및 고충청취 후 맞춤형 고충해소 추진
 - ※ '21년 총 12회 컨설팅(골재채취업, 산업단지, 지하수업계 등)을 통해 발굴된 기업고충 7건 해결
 - ※ 단순노무용역의 연차수당 지급주체 개선,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철도 사용료 조정 요구 등 컨설팅을 통해 접수된 기업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 추진

□ 집단민원 중점 해결 및 집단민원조정법 조속 제정

- (집단민원 중점 해결) 다수기관이 관련되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표류중인 집단민원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해결방안 마련
 - ※ 특히, 100인 이상 집단민원은 원칙적으로 이송하지 않고 권익위가 직접 조정 추진 (예시) 포항 수성사격장 이전폐쇄 요구 조정(2,803명),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갈등 해결(15,000명) 등 집단민원 집중 해결 추진 중
- (법제화 조속 추진) 전문적·효율적·체계적인 집단민원 조정 해결에 필요한 「집단민원조정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
 - ※ 고용진 의원안('20.8.24) 및 이정문 의원안('20.11.20) 정무위 법안2소위 계류 중

□ 국가-지방 옴부즈만 간 협력 체계 구축

-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확대) 지자체별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확대를 지원하고,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의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의무화 추진*
 -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정무위 계류중(민형배 의원안, '20.9.9.)
 - ※ 전국 243개 지자체 중 59개(24.3%)에 설치·운영('21.9월, '20년 대비 10개 신규 설치)

- (협력 강화) '권익위 전국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시민고충처리위에 대한 협력 강화, 민원처리 일관성 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 확대
- (분업체계 구축) 권익위는 사회적 현안 및 다수기관 연계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고충처리위는 지역특색에 맞는 고충처리 특화
 - * 경기도 등 지자체와 시범운영 실시('21.하반기) 후 표준모델 개발, 전국 확대 추진

□ 전문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로 고충해결 사각지대 해소

- (경찰옴부즈만 내실화)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강화된 경찰권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3자적 관점에서 적극적 옴부즈만 역할 수행
 - ※ 권익위-경찰청 MOU 체결(4.28.)을 토대로 경찰관련 고충민원 조사처리 협력 강화
 - ※ 경찰고충민원 처리 현황 : ('18) 733건 → ('19) 1,579건 → ('20) 1,746건 → ('21.9.) 1,579건
- (수사옴부즈만 도입) 검찰, 경찰,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 관련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추진
 -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정무위 계류중(김종민 의원안, '21.5.10.)
- (특별분야 TF팀 운영) 기업, 금융 등 국민적 요구가 높거나 고충민원이 증가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고충처리 역량 집중
 - ※ 기업고충민원 처리 현황 : ('18) 251건 → ('19) 372건 → ('20) 271건 → ('21.9월) 160건
 - ※ 금융고충민원 처리 현황 : ('18) 119건 → ('19) 187건 → ('20) 177건 → ('21.9.) 144건

□ 적극적 행정심판 제도 운영으로 권익구제 확대

- (신속성·인용률 제고) 단순·반복적 심판청구의 재결기간을 단축* 하고,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에 따른 권익침해도 적극 판단
 - * 보정할 수 없는 내용의 반복 청구에 대해 각하 절차 간소화(홍성국 의원안, '20.11.10.)
- (이행상황 점검)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 실태 및 재결 이행상황 등 행정심판 운영실태를 적극 지도·점검*하여 신속한 재결 이행 도모
 - * 처분청 2,053개 기관 중 사건종결건수 상위기관 등을 대상으로 선정
- (전문인력 보강) 법률가 위주로 구성된 현행 위원풀(pool)에 환경·산업·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추가 위촉*, 전문적 사건 대응 강화
 - * 현재 70명 이내로 구성(변호사·법대교수 44명, 의사 14명 등) → 150명 이내로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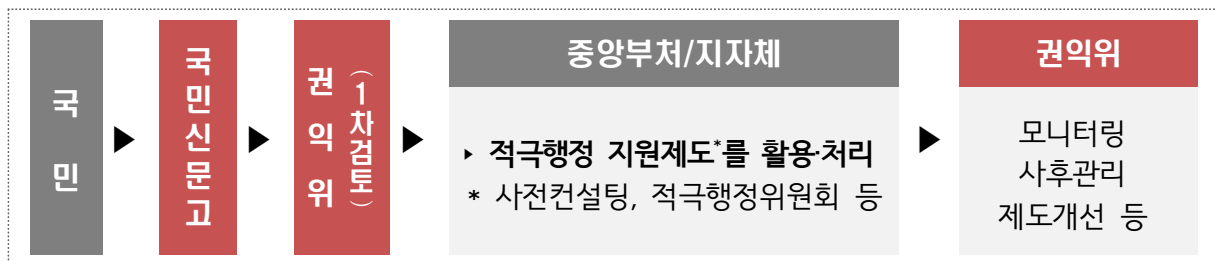
4 국민의 목소리 및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제도개선

□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예방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국민이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면 정부가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체감도 제고

* 감사기구의 장이나 적극행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한 경우, 추후 징계 등 면책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21.7월)

<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절차 >



※ 신청대상 : 민원/국민제안을 기 제출했지만 법령 불명확 등으로 거부/불채택된 사안

- (소극행정 재신고제) 기관별 소극행정 신고 처리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권익위가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재신고제 운영

* 재조사 요구, 신고 처리실태 확인·점검, 소극행정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 국민생각함 등 국민소통 시스템 운영

- (민원서비스 개선) 국민신문고 설치·운영 근거 마련(가칭 「국민신문고법」 제정 추진) 및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민원관리의 책임성 제고

* 민원 처리 후 관련 정책소식을 자동안내하는 '민원 관련 정책알림 서비스' 제공(~12월)

- (이용기관 확대) 공공기관 및 사립대학의 국민신문고 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대국민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 신문고 미사용 공공기관 단계적 이용 확대 추진('21년 28개 예정)
(사립대학) 343개 사립대학 국민신문고 이용 확대 추진 중('21년 40개 추진)

- (국민참여 활성화)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현안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다각화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의 대표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민 패널' 운영(7월~)

□ **민원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정책개선 지원**

- (기획분석) 사회안전망 강화, 포스트코로나 및 탄소중립 등 국정 방향 관련 데이터 분석으로 체계적 정책 추진 지원
 - ※ (예) 태양광 발전, 플라스틱 저감, 2030 청년들의 관심사항 등 과제 발굴·분석
- (데이터 연계 강화) 민원데이터와 주요 공공데이터 간 융복합 분석, 데이터 활용 모델 개발·확산 등 공공기관·학계 협업* 추진
 - * 강원도 민원빅데이터 공동사업 추진 협의('21.5) 등 협업대상 확대 추진
- (원격분석 플랫폼 구축) 국민(산·학·연)이 민원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분석환경을 구축, 이용가치 창출
 - ※ 정보화 전략계획(BPR/ISP) 도출('21.6월), 플랫폼 구축 추진('23~'25년, 약 172억원)

□ **부패방지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부패방지) 정부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 부패유발요인 및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는 국민 일상 속 불공정 해소
 - ※ (예)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 공공기관의 소송비용 예산누수 방지, 건설공사 감리제도 불공정 관행 개선 등
- (국민불편 해소) 민생경제 회복 및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 주거·의료·돌봄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 (예)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유족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제도개선, 공공부과금 연체료 부담 경감방안 등

□ **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으로 종합적 민원상담 추진**

- (민원상담협의회) 다수기관 관련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상담협의회 협의·조정 활성화로 종합적 민원상담 적극 추진
 - ※ 센터 상담·민원 외 지자체·공공기관 등 과제발굴원을 다양화하여 민원상담협의회 상정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
-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96개 정부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 빅데이터 활용·AI 자동상담을 통해 중단 없는 상담서비스 제공
 - ※ 통합콜센터 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추진('22년 정부안 반영 94억/행안부 전자정부사업)

Ⅳ. 202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연번	지적사항 요약
1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후 신속하고 정확한 보호조치 방안 마련 검토
2	부패신고에 대한 위원회 자체 조사권 확보 방안 검토
3	110콜센터 직원들의 근무 여건, 처우 개선 방안 마련
4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
5	부패방지 의무교육 이행률 제고 등 부패방지 교육 강화 방안 마련
6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및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
7	집단민원의 정의, 조정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또는 법률 마련 검토
8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에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포함되도록 보완 검토
9	청렴도 측정의 신뢰도 제고 및 측정항목 보완 방안 검토
10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개선 방안 마련
11	건설현장에서의 노조의 채용 및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갑질 행태에 권익위가 적극 개입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12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시책 평가 실시 검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1.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후 보호조치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	○ 신속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선 보호-후 요건검토 체제로 개선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발의하였음(‘21.3.10.) - 주요내용 : 보호조치 신청 후 위원회 결정까지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이후 불이익조치가 있으면 위원회 최종 결정 시까지 일단 불이익조치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가 노출된 경우 관련 기사 게재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민권익위는 상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2. 부패신고에 대한 위원회 자체 조사권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해 신고사건의 조속한 처리 및 피신고자의 무고한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1.7.23.)하였음 - 현재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 민 권 익 위 원 회	3. 110콜센터 직원들의 근무 여건,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콜110 상담사들이 안정된 고용 환경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사 직접고용 완료('21.2) ※ 상담사 1인 월평균 급여: ('20) 203만원 → ('21) 240만원 ○ 상담사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20년에 위탁사가 수행하던 상담사 피해 유발 민원인(반복적으로 언어폭력·성희롱 등을 행하는 민원인) 고발 등 상담사 지원 업무를 국민권익위가 직접 수행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개정 예정('21.5.) ○ 상담사 스트레스 예방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다양화 ※ '21년 국민콜110 상담사 교육계획 반영·시행 • ('20) 15개 프로그램, 110회 교육 → ('21) 27개 프로그램, 171회 교육 ○ 상담사 편의시설, 회의실, 강의실 등 확충을 통한 상담사 근무환경 개선 ※ 안마기 1대, 공기청정기 6대, 정수기 2대 추가 설치('21.4.) ※ '20년 6월 추가 확보한 청사 공간(250㎡)을 상담사 회의실, 강의실 등으로 리모델링 ('21년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4.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사실상 사후 적발, 사후 조치 방법뿐인 상황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입법 추진 중 – 비위면직자 발생시 취업제한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21.1.8.),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공공 기관의 채용시 취업제한대상 여부 사전 확인을 의무화하는 부패방지 권익위법 개정안을 발의(‘21.2.5.)하는 등 입법 추진 중 ○ 이와 함께 현재 공공기관청렴포털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은 직원 채용시 취업제한대상 사전조회가 가능하고, 권익위는 각 공공기관에 반기별 자료 요구시 취업제한안내 공문 및 취업 전 사전확인 절차를 안내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 민 권 익 위 원 회	5. 부패방지 의무교육 이행률 제고 등 부패방지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직자 전반의 부패방지교육 이행력 강화를 위하여 기관별 부패방지교육 이수현황 등 결과공개, 교육 부실기관에 대한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등 후속 조치 근거를 마련하겠음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개정 추진 (‘20.10.15. 홍성국 의원 발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 민 권 익 위 원 회	6.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및 만족도 향상 방안을 마련 할 것	○ 고충민원 처리기간은 ‘18년 19일, ‘19년 23일, ‘20년 24일로 증가 － 처리기간의 증가 원인은 한정된 조사인력과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건의 증가, 복잡·집단화 된 민원 해소의 어려움으로 파악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r> <tr> <td>접수</td> <td>30,712</td> <td>56,189</td> <td>49,390</td> </tr> <tr> <td>처리</td> <td>14,094</td> <td>17,947</td> <td>18,211</td> </tr> <tr> <td>처리기간</td> <td>19</td> <td>23</td> <td>24</td> </tr> <tr> <td>조사인력</td> <td>130</td> <td>130</td> <td>130</td> </tr> </table> ⇒ 조사인력 확보 및 조사관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확보, 집단민원 조정법 제정을 통해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음 ○ 고충민원 만족도는 ‘18년 76.7점, ‘19년 75.9점, ‘20년 76.9점으로 다소 향상 － 조사결과에 따르면 ‘친절성’ 항목은 87.5점으로 높은 반면, ‘결과 설명’ 항목은 73.3점으로 낮게 나타남 ⇒ 고충민원 답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 조사관 내부 교육을 통해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을 강조 하고, 만족도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를 높여 만족도를 제고하겠음	구분	2018	2019	2020	접수	30,712	56,189	49,390	처리	14,094	17,947	18,211	처리기간	19	23	24	조사인력	130	130	130
	구분	2018	2019	2020																		
접수	30,712	56,189	49,390																			
처리	14,094	17,947	18,211																			
처리기간	19	23	24																			
조사인력	130	130	130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 민 권 익 위 원 회	7. 집단민원의 정의, 조정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또는 법률 마련을 검토할 것	○ 전국적으로 산재한 집단민원을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안이 국회 계류 중임 ※ 고용진의원 대표발의안(‘20.8.24.),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안(‘20.11.20.) ○ 국민권익위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8. 공공재정환수법에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환수 대상에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포함되도록 적용 범위를 보완할 것	○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20.11.2.),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음 ※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21.9.29.) ○ ’21년 6월 15일 완료된 정책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계약관계”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내부심사 중에 있음 -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등을 거쳐 법 개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음 ※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추진일정> · 법률 개정안 전원위 상정(‘21.10.) · 법률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등(‘21.11.) · 법제처 심사 등(‘21.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9. 내부청렴도 가중치 조정 등 청렴도 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변화하는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측정항목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0년 청렴도 측정 시 국민의 평가인 외부청렴도 비중을 강화하는 등 가중치를 조정하고, 소극행정 등 새로운 부패유형을 측정항목으로 신설하였음 ○ '21년에는 기관장·고위직 관련 성비위 사건을 신규 반영하고, 주요 사건에 대한 정성평가를 확대하는 등 객관적인 부패사건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였으며, - 이해충돌 관련 신규항목을 반영하여 국민인식을 반영하고 청렴도 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앞으로도 조사방식과 과정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청렴도 측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 민 권 익 위 원 회	10.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개선 방안을 마련 할 것	○ ‘20년에는 민원서비스 평가등급을 제고하기 위해 대응계획의 체계적 수립, 민원처리상황 점검 강화, 위원장의 민원현장 방문 등 대내외 활동 강화, 성과평가시 민원처리 우수·미흡부서의 가·감점 부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대비 평가결과가 대폭 개선되었음(마 등급 → 나 등급) ○ ‘21년에도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처리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처리기간 단축 및 답변 충실도 제고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 민 권 익 위 원 회	11. 건설현장에서의 노조의 채용 및 불리한 근로 조건을 강요하는 갑질 행태에 권익위가 적극 개입하여 공정성을 확보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우선 고용노동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들의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해당 기관에 건설현장의 채용 갑질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 조사·시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21.6.) - 고용부는 상·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기간 운영, 사업장 대상 법 준수여부 자율점검표 발송 등을 통해 공정한 채용관행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권익위에 제출('21.7.) ○ 노-사(노조와 건설회사) 또는 노-노(건설노조 간) 채용 관련 갈등에 국민 권익위가 직접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수집된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건설현장의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계속 검토해 나가겠음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의 채용절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례 등 실태조사('21.9.)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 민 권 익 위 원 회	12. 국민권익위원회 스스로에 대해서도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시책 평가 실시를 검토할 것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주관기관이 스스로를 평가하여 타 기관과 비교·발표하는 것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측정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다만,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의 총괄기관으로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한층 강화된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직무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일체 수수금지, 민·관폐 주기적 점검, 매년 갑질 실태 점검, 권익행정 만족도 조사 실시 -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으로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자체교육 및 감찰활동 등을 통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청렴 수준을 유지해 나가겠음

Ⅴ . 2021년 감사원 ·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감사기간	감사 종류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21.3.15. ~3.19.	재무감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0.2.3.~ 2.27. '20.5.6.~ 5.21. (결과통보) '21.7.27.	특정감사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평가 운영 실태)	○ 통보 - 부정행위로 국민신문고 만족도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방식 개선 - 평가결과 세부내용을 평가대상기관에 제공하는 등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병무청 등 민원만족도 조작 의혹으로 감사 실시	- 만족도 배점 하향 조정 ('17년 80% → '21년 45%) - 부정행위 적발시 제재 강화 ※ 부정행위 확인된 연도는 최하등급 이후 3년간 -5점 감점 - 평가결과 세부내용을 대상 기관에 제공 ※ 기관 홈페이지에 평가결과 공개 방안 마련 중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감사기간	대상 부서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21.6.9. ~ 7.6. * '21. 9. 17. 감 사 결 과 최 종 확 정 및 통보	부패방지국	○ 시정 5건 - 폐지법령 삭제 등 부패영향 평가 제외법령 명단 정비 - 청렴포털 시스템상 누락·지연 입력되어 있는 정보 수정(2건) - 부당 집행된 특근매식비 반납 - 부당 집행된 출장식비 반납 ○ 주의 6건 - 예산과목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 유의 - 특근매식비 집행 철저 - 출장비 정산 철저 - 업추비 50만원 이상 집행시 주된 상대방 기재 철저 - 업추비 사용시 영수증 실명 서명 철저 - 일상감사 누락 유의 ○ 통보 5건 -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 마련 - 청렴포털 누락·지연 입력 방지 관리방안 마련(2건) -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한 인수인계 철저 - 청렴연수원 자료실 도서 관리방안 마련	○ 조치 중 ○ 조치 중 ○ 조치 중

Ⅶ. 소속기관 운영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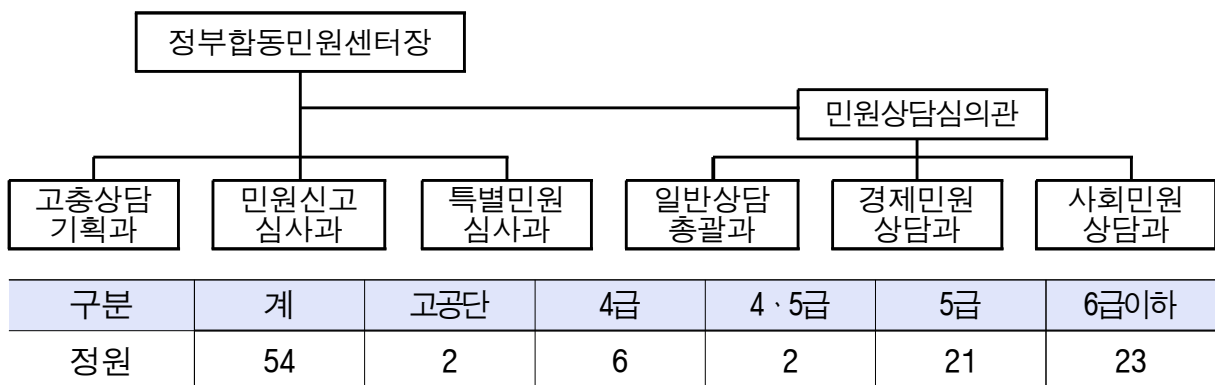
1 정부합동민원센터

□ 기능

- 서울 및 세종 민원상담센터 운영
 - 민원·행정심판의 안내, 상담접수 및 화상상담시스템 관리
- 110 콜센터 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총괄
- 부패·부정청탁·금품 등 수수·행동강령 위반 및 공익 신고 관련 상담·접수·분류
-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의 등록·분류·사후관리 및 현황 분석·보고
- 온라인 민원 상담시스템 운영
-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관계 기관 간 협의
- 민원증명서 신청 및 교부

□ 조직

- 6과, 정원 54명



□ 예산

- 106억 9천만원(종합상담창구 운영)

※ 국민콜110 운영 105억 1천만원, 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 1억 8천만원

□ 상담접수 실적

(단위 : 건수, '21. 9월)

구분	민원		국민콜110		대비실 서신 민원	부패 신고 상담	공익 신고 상담	청탁 금지 상담	부정 청구 상담	행정심판	
	상담	접수	전화	온라인						상담	접수
실적 건수	35,229	2,960	2,433,279	57,035	18,407	8,987	1,474	559	1,245	267	468

□ 110콜센터 운영실적

- 정부콜센터 상담번호 통합·연계사업 지속 추진 ('15.~'20.)
 - 총 34개 기관 42개 번호 통합·연계
 - ※ 과천청사 소재 콜센터(12개 기관 13개 번호), 전문상담 대행(6개 기관 9개 번호), 비긴급신고전화 연계(16개 기관 20개 번호)
- 국민콜110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추진
 - ※ 인지도 : ('17년) 37.9% → ('18년) 34.8% → ('19년) 39.1% → ('20년) 44.3%
- 악·강성 전화민원으로부터의 상담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예규 제정을 통해 악·강성 민원의 처리기준 확립('18.10.1)
 - ※ 반복·억지 민원에 대한 이용정지(7일) 및 성희롱·폭언에 대한 법적 대응
- 비긴급 신고전화의 연계상담 체계 구축
 - 긴급기관(112·119)이 긴급출동을 위한 골든타임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비긴급전화에 대해 국민콜110에서 상담·처리('16.10.~)

□ 110콜센터 운영성과

- 최근 콜센터 이용(인입콜) 증가, 응대율·만족도 유지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9월
인입콜(건)	267만	293만	325만	314만	380만	249만
응대율(%)	96.4	96.1	95.2	93.3	86.3	91.1
만족도(%)	91.3	91.5	86	87.5	88.2	-

- 110 접수민원 중 80%이상이 소관기관 이송하지 않고 자체종결
 - ※ 전화민원 자체종결 83.0%('21년 9월)

2 청렴연수원

□ 기능

- 반부패·청렴교육 기획 및 운영
- 반부패·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반부패·청렴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
- 대국민 반부패·청렴 콘텐츠 공모전 기획·운영
- 외국공무원 청렴연수 및 반부패 정보교류(ODA)

□ 조직

- 2과, 정원 25명

원장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구분	계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전문 경력관	시간 선택제
정원	25	-	1	-	2	2	18	1	1

□ 예산

- 23억 1,400만원(청렴교육및의식확산, 반부패기술지원)

□ 주요 실적

- 기관방문·원내교육 : 총 145회, 59,567명 수료('21.1~9월)

구분	합계	기관방문 교육	원내 집합교육
횟수	133	66	79
수료인원	64,046	48,066	15,980

- 이러닝교육 : 총 115회, 142,638명 수료('21.1~9월)

Ⅶ. 각종 민원·신고 처리 현황

1 부패방지

□ 부패신고 접수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9.
건수	37,725	3,758	4,066	7,328	9,435	6,103	7,035

□ 부패신고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9.
계	37,374	3,735	3,966	7,224	8,718	6,355	7,376
이첩	1,825	324	221	306	415	446	113
행동강령 위반통보	976	67	48	78	190	252	341
기관송부	3,525	98	127	377	369	846	1,708
종결	31,048	3,246	3,570	6,463	7,744	4,811	5,214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9.
보호	364(117)	15(8)	9(5)	38(13)	106(30)	107(40)	89(21)
보상	4,243(1,163)	102(90)	119(113)	210(166)	948(196)	1,558(237)	1,306(361)
포상	42(41)	11(11)	9(8)	9(9)	6(6)	2(2)	5(5)
구조금	-	-	-	-	-	-	-

* ()는 인용건수

** 부패신고 구조금은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 시행일(2020.10.17.) 이후 신고건으로 인한 피해부터 적용.

□ 공익신고 접수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9.
건수	23,430	2,611	2,521	3,923	5,164	5,546	3,665

□ 공익신고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9.
계	23,421	2,560	2,238	3,952	5,165	5,563	3,943
이첩	1,516	79	85	37	388	629	298
기관송부	9,201	1,155	534	943	2,187	2,975	1,407
종결	12,704	1,326	1,619	2,972	2,590	1,959	2,238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9.
보호	455(145)	20(7)	28(12)	53(21)	130(42)	126(41)	98(22)
보상	7,795(5,045)	3,737(2,476)	2,316(1,710)	698(277)	364(211)	436(249)	244(122)
포상	59(59)	3(3)	3(3)	7(7)	29(29)	12(12)	5(5)
구조금	111(22)	2(2)	5(1)	10(7)	19(5)	17(1)	58(6)

* ()는 인용건수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9.
건수	8,363	100	1,265	2,862	2,244	1,195	697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9.
계	8,338	85	1,082	2,692	2,392	1,306	781
이첩	353	3	53	67	136	74	20
기관송부	1,558	1	287	518	347	245	160
종결	6,427	81	742	2,107	1,909	987	601

2 고충처리

□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 계	처리 계	처 리 유 형								
			고충민원								기타민원
			인 용				심의 한·내 기각	각하	이송 · 이첩	종결	종결 · 취하
			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2016	30,252	21,080 (30,625)	3,031	212	252	2,567	949	398	89	6,768	9,845
2017	26,533	16,149 (26,623)	2,586	174	211	2,201	696	456	85	6,440	5,886
2018	30,712	14,094 (26,609)	2,413	210	238	1,965	1,115	555	89	5,597	4,325
2019	56,189	17,947 (42,031)	2,452	317	316	1,819	2,907	812	1,756	3,928	6,092
2020	49,390	18,211 (45,657)	2,245	292	434	1,519	3,822	778	2,957	2,328	6,081
2021.9.	47,626	14,402 (47,433)	1,553	149	261	1,143	3,108	644	2,500	1,893	4,704

* ()는 유사·반복민원 처리건수를 포함한 수치

□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21.1.~9.)

구분	접수	처리	고충민원								기타민원
			인 용				심의 한·내 기각	각하	이송 · 이첩	종결	종결 · 취하
			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계	47,626	14,402	1,553	149	261	1,143	3,108	644	2,500	1,893	4,704
행정문화	8,300	4,869	80	13	7	60	554	138	337	796	2,964
국방보훈	1,476	998	147	12	17	118	274	48	204	109	216
경찰	2,458	1,579	124	22	25	77	418	163	276	404	194
재정세무	1,981	1,068	166	23	12	131	406	59	92	149	196
복지노동	2,236	1,758	191	19	42	130	157	45	997	90	278
산업농림	3,858	984	194	16	21	157	190	64	183	189	164
주택건축	16,279	647	171	12	45	114	295	21	10	34	116
도시수자원	2,909	854	118	13	31	74	292	47	265	51	81
교통도로	6,575	1,054	286	17	36	233	470	48	130	60	60
기업고충	188	160	67	2	23	42	46	11	6	8	22
기타	1,366	431	9	-	2	7	6	-	-	3	413

□ 연도별 집단민원(5인 이상)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9
접 수		261	232	229	266	299	186
처 리 (인용)	조 정	72	76	65	47	53	25
	합 의	62	52	39	22	35	49
	시정권고	3	3	5	8	11	12
	의견표명	9	8	6	9	14	28
	합 계	146	139	115	86	113	114

□ 달리는 국민신문고(이동신문고) 운영현황

(단위 : 건)

이동신문고 운영		2020			2021									
구분		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실시횟수		68	12	15	1	0	3	5	10	5	5	4	1	7
상 담 실 적	현장해결	760	134	132	5	0	29	89	163	60	66	19	1	62
	고충민원접수	224	53	31	0	0	3	6	42	15	22	6	9	37
	상담안내	436	63	80	3	0	33	56	79	26	47	15	1	33
	계	1,420	250	243	8	0	65	151	284	101	135	40	11	132

3 행정심판

□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연도	구분 접수	심리·의결				인용률(%)			취하 · 이송
		계	인용	기각	각하	전체	운전	운전제외	
2016	26,730	26,080	3,901	19,315	2,864	16.8	17.5	12.8	1,699
2017	27,918	25,775	3,584	19,105	3,086	15.8	16.8	9.7	1,307
2018	23,043	25,153	3,814	18,928	2,411	16.8	17.3	14.4	1,401
2019	24,076	21,534	1,567	14,166	5,801	10.0	9.7	10.9	1,271
2020	22,367	22,727	1,573	16,783	4,371	8.6	7.7	11.6	1,094
2021.9.	13,901	14,476	1,288	11,478	1,710	10.1	7.7	16.6	794

□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연도	구분	일반사건(의료포함)				보훈사건					운전면허사건					
		접수	심 리 · 의 결				접수	심 리 · 의 결				접수	심 리 · 의 결			
			소계	인용	기각	각하		소계	인용	기각	각하		소계	인용	기각	각하
2016		4,611 (17.3)	4,600	390 (18.8)	1,685	2,525	1,372 (5.1)	1,424	52 (3.8)	1,314	58	20,747 (77.6)	20,056	3,459 (17.5)	16,316	281
2017		5,731 (20.5)	4,669	266 (14.0)	1,633	2,770	1,445 (5.2)	1,343	42 (3.3)	1,244	57	20,742 (74.3)	19,763	3,276 (16.8)	16,228	259
2018		4,912 (21.3)	5,251	596 (19.1)	2,530	2,125	1,304 (5.7)	1,442	53 (3.9)	1,317	72	16,827 (73.0)	18,460	3,165 (17.3)	15,081	214
2019		9,258 (38.4)	7,607	297 (14.7)	1,722	5,588	1,292 (5.4)	1,148	40 (3.7)	1,038	70	13,526 (56.2)	12,779	1,230 (9.7)	11,406	143
2020		6,762 (30.2)	7,139	438 (14.3)	2,627	4,074	1,328 (5.9)	1,080	36 (3.6)	974	70	14,277 (63.8)	14,508	1,099 (7.7)	13,182	227
2021.9.		3,916 (28.2)	3,964	502 (20.3)	1,972	1,490	856 (6.1)	997	65 (6.9)	883	49	9,129 (65.7)	9,515	721 (7.7)	8,623	171

4 국민소통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월평균)	신문고	부처 홈페이지	서신(BH)	지자체 등 이송이첩
2016	2,305,601 (월 192,133)	1,359,614	802,116	28,963	114,908
2017	3,101,601 (월 258,467)	1,949,387	1,031,012	31,833	89,369
2018	4,735,392 (월 394,616)	2,742,615	1,864,975	34,194	93,608
2019	7,995,116 (월 666,259)	4,599,017	3,234,517	33,974	127,608
2020	9,570,011 (월 797,708)	6,494,339	2,902,774	25,037	147,861
2021.9.	10,348,805 (월 1,149,867)	7,305,924	2,978,686	18,454	45,741

□ 국민신문고 제안 접수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월평균)	국민제안	공무원제안
2016	84,717 (월 7,060)	79,337	5,380
2017	87,825 (월 7,319)	81,701	6,124
2018	108,746 (월 9,062)	102,919	5,827
2019	111,049 (월 9,254)	105,962	5,087
2020	137,006 (월 11,417)	129,963	7,043
2021.9.	146,237 (월 16,249)	142,111	4,126

□ 국민콜110 운영 현황

(단위: 건, %)

연도	인입콜	응대콜	응대율	일평균 응대콜
2016	2,667,572	2,571,024	96.4	9,807
2017	2,931,598	2,817,404	96.1	10,522
2018	3,254,756	3,097,860	95.2	11,548
2019	3,139,917	2,928,671	93.3	10,911
2020	3,801,491	3,280,256	86.3	12,174
2021.9.	2,490,314	2,268,021	91.1	11,267

Ⅷ. 소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 현황

1 소관 시행령 제정·개정·폐지 현황

시행령명	제·개정 일자	제·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2. 29. 제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와 국가 청렴위원회의 부패방지활동 및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의 권익구제 창구를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소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사무처의 업무 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9. 5. 28. 일부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취지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규정을 정비하고, 고충민원 조사 업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한편,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011. 4. 4. 일부개정	과태료 부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시행령명	제 · 개정 일자	제 · 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 10. 17. 일부개정	공익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2015. 10. 20. 일부개정	부패행위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패행위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상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보상금의 상한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기피신청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2016. 9. 27.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의 효율적인 부패방지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계량적 부패측정 및 조사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을 의무화하여 공직자의 청렴성 및 윤리의식을 제고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및 비위면직자 등의 해임요구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45호, 2016. 3. 29. 공포,

시행령명	제 · 개정 일자	제 · 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30. 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조사 · 평가 결과에 관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개기간, 공직자에 대한 부패 방지교육의 방법 · 결과제출에 관한 사항,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범위 및 비위면직자 해임요구 거부 시 과태료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8. 1. 30. 일부개정	부패행위 신고자 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회의를 영상회의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19. 10. 15. 일부개정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등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 · 단체 · 기업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부패행위 신고자뿐만 아니라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행위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육체적 · 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24호, 2019. 4. 16. 공포, 2019. 10. 17.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고, 구조금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패방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020. 12. 22.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조사기관이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 · 재이첩 등을 한 경우 이첩 · 재이첩 등을 받은 다른 조사기관도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가 종료되면

시행령명	제 · 개정 일자	제 · 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2. 22. 일부개정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결과 등의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권고 등을 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 및 신청인 등이 미리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2011. 9. 30. 제정	복잡·다난한 행정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 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공익신고의 처리 절차, 보호조치 등의 신청 방법 등을 규정
	2014. 4. 8. 일부개정	국가공무원 등이 정치운동 등의 지시를 받은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치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사람은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이의제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수사기관 등 국민권익위원회 이외의 공익신고 기관도 공익신고 접수, 처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시행령명	제 · 개정 일자	제 · 개정 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2014. 9. 2. 일부개정	공익신고 보상금만을 목적으로 한 공익신고 전문 신고자로 인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보상금이 개인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보상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20만원 이하인 경우로 상향 조정하고, 공익신고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2016. 1. 25. 일부개정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와 구분하고, 특별보호조치결정 및 보상금 지급 규정을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며,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등의 불이행자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 13443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보호조치 결정 등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특별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17. 10. 17. 일부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절차 안내 신설
	2018. 4. 30. 일부개정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30억원으로 상향하며, 긴급 구조금 제도를 도입함

시행령명	제 · 개정 일자	제 · 개정 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2018. 10 .16. 일부개정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 비실명 대리신고되어 봉인·보관된 인적 사항 등의 자료를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높임
행정심판법 시행령	2008. 2. 29. 일부개정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
	2010. 7. 26. 전부개정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증가와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의 증가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방법과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절차,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5. 12. 30. 일부개정	사용자등록 시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등록하도록 규정
	2016. 10. 4. 일부개정	제척 및 기피신청 관련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2017. 3. 27. 일부개정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함(타법개정)

시행령명	제 · 개정 일자	제 · 개정 이유
행정심판법 시행령	2017. 10. 17. 일부개정	간접강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2018. 4. 17. 일부개정	조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2018. 10. 30. 일부개정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법률 제15025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 신청절차 및 국선대리인의 자격 · 보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20. 7. 14.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2020. 7. 15. 시행) 제정으로 설치·운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를 두어 행정심판을 직접 관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위나 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행정청에 포함(타법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9. 8. 제정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수 금지 금품 등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시행령명	제 · 개정 일자	제 · 개정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의 가액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8. 1. 17. 일부개정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상한액 조정
	2020. 9. 10. 일부개정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20년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2021. 1. 19. 일부개정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 12. 31. 제정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되, 고의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서는 환수에 추가하여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고액부정청구등의 행위자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부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환수 ·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323호, 2019. 4. 16.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정 지급금의 범위를 마련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경우 부과하는 이자와 부정이익의 가액 산정 기준 등 부정이익의 환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령명	제 · 개정 일자	제 · 개정 이유
공무원 행동강령	2008. 11. 5. 일부개정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확고히 규정
	2008. 12. 31. 일부개정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의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화된 공직환경에 따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2016. 9. 27. 일부개정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收受)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수수 가능한 사례금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 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 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외부강의 등의 횡수를

시행령명	제 · 개정 일자	제 · 개정 이유
공무원 행동강령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
	2018. 1. 16. 일부개정	사적 이해관계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이 있는 퇴직자(2년 이내)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며, 공직자가 민간인에 대한 알선·청탁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
	2018. 12. 24. 일부개정	인가·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과 같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
	2020. 4. 7. 일부개정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반영하려는 것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010. 11. 2. 제정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비윤리적 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의 불신이 높은 실정이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의

시행령명	제 · 개정 일자	제 · 개정 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010. 11. 2. 제정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이행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
	2016. 9. 27. 일부개정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收受)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수수 가능한 사례금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 반영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지방의회의원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외부강의 등의 횡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2018. 12. 24. 일부개정	지방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안전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나 지방의회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시행령명	제 · 개정 일자	제 · 개정 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020. 4. 7. 일부개정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지방의회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반영

시행규칙명	제 · 개정 일자	제 · 개정 이유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2008. 3. 3. 일부개정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및 표현 등을 정리
	2010. 8. 11. 전부개정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증가와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의 증가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2. 9. 20.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법령상 사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심판 청구인 등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

시행규칙명	제 · 개정 일자	제 · 개정 이유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2017. 10. 19. 일부개정	간접강제 제도 도입에 따른 서식을 신설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이 시행령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2018. 11. 1. 일부개정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 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 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법률 제15025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 및 같 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8. 10. 30. 공포, 1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선대 리인 선임 신청서의 서식을 신설
	2020. 6. 19 일부개정	행정심판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 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일부에 해당하 는 정보를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려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부담을 완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5. 8. 7. 제정	「민법」에서 위임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및 그 감독에 사항은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15년 8월 24일까지로 그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폐지하는 대신,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대체 규정을 시행규칙(총리령)으로 상향 제정